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6. .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6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7. 6. 13)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 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정원의 연장과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 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과 부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2,649명을 2,654명으로 5명 증원(안 제2조 및 별표1)

(1) 집행기관의 정원 : 1,477명 \Rightarrow 1,482명(+5명)

- 일반직 4명(6급 +2, 7급 +2), 연구직 1명(연구사 +1)

(2)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나. 직급 조정 : 일반직 5명, 기능직 2명(별표1)

(1) 일반직 : 7급 Δ 5명 \Rightarrow 6급 +5명

(2) 기능직 : 8급 Δ 2명 \Rightarrow 6급 +2명

다. 한시기구 및 한시직급정원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항 및 제3항)

(1) 혁신담당관실(4급) : 2007. 6. 30. \Rightarrow 2008. 6. 30.

(2)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4급) : 2007. 6. 30. \Rightarrow 2009. 12. 31.

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별표2)

(1)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한시정원(5급2, 6급1, 7급1) : 2007.
6. 30. \Rightarrow 2008. 6. 30.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연기봉)

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권고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49명에서 2,654명으로 5명 증원하고 기술직 및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 상향조정 7명과 한시기구인 혁신담당관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표-1]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한시기구	설치일자	현행	개정
혁신담당관실	2004. 2. 7	2007. 6.30	2008. 6.30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2004. 8. 2	2007. 6.30	2009.12.31
신도시건설팀	2006. 1. 1	2008.10.30	현행과 같음
생명산업추진단	2003. 1. 1	2007.12.31	현행과 같음

나. 정원 5명 증원에 대하여

정원 5명 증원은 감사관실 1명, 총무과 2명, 주민생활지원과 1명, 경제정책팀 1명으로 증원되는 사유는 이해가 되나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20명 증원후 불과 2개월여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표-2] 증원 현황

부서	증원사유	인원	비고
감사관실	농업 및 경제특별도 추진실태 감사요원 보강	6급 1명	자체 증원
총무과	공무원 교육시간 이수제 등 교육 훈련 강화 및 직장협의회 합법노조 전환(예정)에 따른 인력보강	7급 1명	행자부 권고
"	기록물연구사	연구사 1명	"
주민생활지원과	민간협력 기능강화 인력보강	7급 1명	자체 증원
경제정책팀	대부업관리감독 및 소비생활센터 인력보강	6급 1명	행자부 권고

다. 한시직급정원에 대하여

한시정원은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시직급정원의 경우 부칙 제2항에서 본청, 사업소로 표기하고 있어 어느부서의 어떤 직위가 한시직급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한시정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성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 요지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6. 13(제2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장

2. 수정이유

가. 중앙정부 권고 또는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진단을 통한 부서간 인력조정 등의 검토없이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지난 4월, 20명 증원에 이어 2개월여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지나친 정원 증원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총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3. 수정주요내용

○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함(안 제2조 및 별표1).

- 정원의 총수 2,649명 ⇒ 2,654명(5명 증원)을 현행대로 2,649명으로 함(안 제2조 본문).

- 집행기관의 정원 1,477명 ⇒ 1,482명(5명 증원)을 현행대로 1,477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 6. .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이유

- 가. 중앙정부 권고 또는 신규행정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진단을 통한 부서간 인력조정 등의 검토없이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나. 지난 4월, 20명 증원에 이어 2개월여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지나친 정원 증원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총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2,649명 ⇒ 2,654명(5명 증원)을 현행대로 2,649명으로 함(안 제2조 본문 및 별표1).
- 나. 집행기관의 정원 1,477명 ⇒ 1,482명(5명 증원)을 현행대로 1,477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64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77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058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70명

별표1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 2,649명을 2,654명(증원 5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85명을 990명(증원 5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를 “일반직 6급란 합계 “360”을 “365”로 하고 동란의 본청 “277”을 “282”로 하며, 일반직 7급란 합계 “379”를 “374”로 하고 동란의 본청 “281”을 “276”으로 하며, 기능직 6급란 합계 “9”를 “11”로 하고 동란 본청의 “6”을 “8”로 하며, 기능직 8급란 합계 “54”를 “52”로 하고 동란 본청의 “17”을 “15”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 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u>2,649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77명</u></p> <p>2.~4. (생략)</p>	<p>제 2조(정원의 총수) ----- ----- ----- <u>2,654명</u>----- -----</p> <p>1. ----- : 1,482명</p> <p>2.~4. (현행과 같음)</p>	<p>제 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4. (개정안과 같음)</p>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반직 6급란 합계 “360”을 “365”로 하고 동란의 본청 “277”을 “282”로 하며, 일반직 7급란 합계 “379”를 “374”로 하고 동란의 본청 “281”을 “276”으로 하며, 기능직 6급란 합계 “9”를 “11”로 하고 동란 본청의 “6”을 “8”로 하며, 기능직 8급란 합계 “54”를 “52”로 하고 동란 본청의 “17”을 “15”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본청의 정원 4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4급 1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2명(3급1, 4급1)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부칙(제2965호, 2006. 12. 22.)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정 원	2,649	985	70	1,307	287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85	819	44	67	155
	2-3급	1		1		
	3급	9	7		1	1
	3-4급	1	1			
	4급	60	40	7	5	8
	5급	217	172	10	14	21
	6급	365	282	14	19	50
	7급	374	276	12	24	62
	8급	57	40		4	13
일반·정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7급	1	1			
별정직	소계	18	10	2	5	1
	1급	1	1			
	5급	2	2			
	6급	10	3	1	5	1
	7급	2	2			
	8급	2	1	1		
연구직	소계	140	1		110	29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9	1		92	26
지도직	소계	25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19	
소방직	소계	1,058	59		999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8	6		62	
	소방장	145	11		134	
	소방교	327	24		303	
	소방사	421	2		419	
교 원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교	11			11	
기능직	소계	274	92	23	57	102
	6급	11	8	1	1	1
	7급	30	10	4	4	12
	8급	52	15	1	4	32
	9급	87	23	7	30	27
	10급	94	36	10	18	30

[별표2]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0	일반직 : 4급1, 5급6, 6급9, 7급7, 8급6 기능직 : 10급1		
본 청	4	일반직 : 5급2, 6급1, 7급1	2008. 6. 30.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2	일반직 : 6급1, 7급1	2007. 12. 31.	사업별예산업무
	4	일반직 : 5급1, 6급2, 7급1	2008. 12. 31	역사규명업무
	1	일반직 : 6급1	2008. 12. 31.	과거사 업무
	3	일반직 : 7급1, 8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부기업무
	1	일반직 : 7급1	2008. 12. 31.	동학관련업무
	15	일반직 : 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2008. 10. 30.	혁신·기업도시 관련업무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5조(소관사무)생명산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p> <p>5.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연구시설, 대학등 유치에 관한사항</p> <p>6. ~ 10. (생략)</p> <p>부칙(제2965호, 2006. 12. 22)</p> <p>제1조 (생략)</p> <p>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조 ~ 제5조(생략)</p>	<p>제35조(소관사무)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p> <p>5.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및 대학 등 유치에 관한사항</p> <p>6. ~ 10. (현행과 같음)</p> <p>부칙(제2965호, 2006. 12. 22)</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균형발전본부 신도시건설팀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조 ~ 제5조(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16조(한시정원)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④<삭제>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1조 (정원의 규정)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49명 ⇒ 2,654(증5명)

- 일반직(+4) : 6급 +2, 7급 +2
- 연구직(+1) : 연구사 +1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 계	253,755	
○ 인건비	213,036	
- 기본급	120,004	※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6급(2명) : 18호봉 기준 - 7급(2명) : 15호봉 기준 - 연구사(1명) : 16호봉 기준
- 수 당	38,729	
- 정액급식비	7,800	
- 교통보조비	7,800	
- 명절휴가비	11,999	
- 가계지원비	20,039	
- 연가보상비	6,665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11,34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8,9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0	
○ 이 전 경 비	29,379	
- 성과상여금	3,998	
- 연금부담금	21,100	
- 국민건강보험금	4,281	
- 연금지급금	-	